

3. 연구업무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자체연구과제"라 함은 본 대학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.</p> <p>2. "수탁연구과제"라 함은 자체연구과제를 제외한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과제를 말하며, 과제별 구분은 별도로 정한다.</p> <p>3. "연구업무"라 함은 일반적인 연구업무는 물론 연구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.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(현행유지)</p> <p>1. (현해유지)</p> <p>2. (현행유지)</p> <p>3. "연구업무"라 함은 일반적인 연구업무는 물론 연구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기술이전 관련 업무 및 구매·자산, 검수, 재무·회계, 감사 업무를 포함한다.</p>
<p>제4조(업무관장) <u>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, 대외협력, 연구계약, 연구결과의 활용 등의 관련 업무는 본 대학의 산학협력단(이하 "연구지원 총괄부서"라 한다)에서 관리하고, 연구비의 집행 등의 관련업무는 학과 등(이하 "연구지원 단위부서"라 한다)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</p>	<p>제4조(업무관장) <u>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중 연구기획, 대외협력, 연구계약, 정산, 연구결과의 활용, 구매·자산, 검수, 재무·회계, 감사 등의 관련 업무는 본 대학의 "연구지원 총괄부서"인 산학협력단 연구처, 산학처 및 운영지원부에서 관리하고, 연구비 집행 등의 관련업무는 "연구지원 단위부서"인 학과 등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</p>